

● 중소기업부공고제2023-313호

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5월 26일
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##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개정(법률 제19395호, 2023. 4. 18., 일부개정)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, 결성 주체 및 등록 요건, 투자 의무 및 행위제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

### 2. 주요내용

가.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등록·운용 요건 구체화 (안 제34조제2항·제3항·제4항, 제39조, 제47조, 제48조, 제49조)

- 1) 소형 모펀드의 난립 방지를 위해 출자금 총액을 1,000억원 이상, 분할 출자시 최초 출자금액은 200억원으로 명시
- 2)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, 신기술사업금융업자처럼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가능한 집합투자업자의 요건을 납입자본금 20억원 이상, 상근 전문인력 2명 이상으로 설정
- 3)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려는 조합의 출자 1좌 금액, 유한책임조합원 수,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, 존속기간 등 요건 제시
- 4)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해산사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합을 계속하기 위해 신고서 제출시 변경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
- 5)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등록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중소기업부장관의 장부·서류검사 사유에 포함
- 6)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등록·변경등록 관련 중소기업부장관 권한 일부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위임 근거 마련
- 7)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등록·변경등록 관련 중소기업부장관 업무 일부의 한국벤처투자 또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위탁 근거 마련
- 8)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등록 사무를 위한 중소기업부장관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포함 자료 처리 근거 마련

- 나.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및 행위제한 완화 (안 제35조제4항·제6항, 제37조의2제2호·제3호)
- 1) 수익성 중심의 자율적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상장 법인 보유제한비율 완화,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 허용
  - 2)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의무 비율을 출자금 총액의 60%로 명시
  - 3) 운용 편의를 위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자펀드(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출자한 벤처투자조합) 운용을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

- 다.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관련 창업기획자·벤처투자조합·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운용 규정 정비 (안 제13조 제5항, 제15조제2항, 제20조, 제24조, 제34조제1항, 제35조제5항, 제37조의2제1호)
- 1) 창업기획자가 결성가능한 벤처투자조합의 범위를 법 제50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명확화
  - 2)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·벤처기업 투자비중 산정 대상에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 제외
  - 3) 자펀드 출자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산정
  - 4) 동일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상장 법인 투자비중, 창업·벤처기업 투자비중 산정 대상에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제외

- 라. 개인전문투자자 및 유한(책임)회사 전문인력의 경력 인정 범위 등 입법 미비사항 해소 (안 제4조, 제13조 제4항, 제14조, 제15조제2항, 제33조)
- 1)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요건 중 인정 경력에 창업기획자 경력을 포함
  - 2)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개정(법률 제18861호, 2021.12.28., 전부개정)에 따라 ‘초기창업자’ 명칭을 ‘초기 창업기업’으로 일괄 변경
  - 3) 유한회사·유한책임회사 전문인력의 인정 경력에 창업기획자,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에서의 경력을 포함

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- 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세종특별자치시 가림로 180,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(어진동)
- 전자우편 : kimyh6887@korea.kr 또는 sh983@korea.kr
- 팩스 : 044-204-7719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(전화 044-204 - 7711, 7718/ 팩스 044-204-771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